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57

발의연월일: 2025. 6. 4.

발 의 자:김현정・김문수・박지원

박해철 • 김 윤 • 양문석

양부남 • 박홍배 • 민병덕

김남근 • 이학영 • 이강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(공모펀드)와 달리 사모집합투자기구 (사모펀드)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차입 제한 등의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순자산액의 4배 한도 내에서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음.

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무리한 차입, 특히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(Leveraged Buyout, 차입인수) 방식의 과도한 차입이 인수대상 기업에게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안기고 자산의 매각, 재무구조 악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상 기업을 파산위험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.

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

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 16)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400"을 "200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6항까지의"를 "제7항까지의"로 한다.

-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1.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: 제 1항제1호·제2호·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1항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- 2.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: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

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제249조의16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 시 이 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보고의 대상과 범위,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제249조의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별도의 기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기한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49조의7(일반 사모집합투자기 제249조의7(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) ① -----등)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(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 ----200-----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-----. <단서 삭제>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 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제1호 · 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 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

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1. ~ 4. (생 략)② ~ ⑥ (생 략)<신 설>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 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.
- 1.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 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: 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를 합산한 금액또는 제1항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- 2.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제 165조의4제2항에 따른 외부평 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 에 대한 평가를 받은 보고서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은 경우: 제1항 각 호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래제한 등) ① ~ ④ (생 략)

<신 설>

의	금액을	합산현	한 금	액이	일
반	사모집	합투자	기구	의	자산
<u>총</u>	액에서 .	부채총역	액을	뺀.	가액
의	100분의	400	이내	에서	대
 통i	령령으로	- - - - 정하	는 비	율을	을 초
과	하지 아 ⁻	니할 것	<u> </u>		

<u>(8)</u>	 <i>7</i>	세7항7	가지의	

제249조의16(이해관계인과의 거 제249조의16(이해관계인과의 거 래제한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> ⑤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 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 시 이해상충 여 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보고의 대상과 범위.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
<u>다.</u>